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92호)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6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5

1.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최은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 5

# Ⅰ. 개요

##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992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

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 2.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65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2.

(3) 회 부 일 : 2025. 10. 2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함.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임.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11조의6 신설).

## Ⅱ. 검토의견

### 1.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최은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 조건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 □ 원료용 중유 조건부 면세 |
| <신 설> | -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최은석의원안) |
| □ 조건부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 □ 원료용 중유 조건부 면세 |
| <신 설> | -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박성훈의원안) |
| | □ 부 칙 |
| | ○ 시행일<br>- 공포 후 6개월(최은석의원안)<br>- 2026년 1월 1일(박성훈의원안) |
| |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중유부터 적용 |

* 최은석의원안 2025. 2. 7. 발의(의안번호 7992), 박성훈의원안 2025. 10. 22. 발의(의안번호 13665)

□ 2건의 개정안은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를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용' 중유와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여, 원료용 중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유류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

과하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에 대하여 연료용 중유 및 원료용 중유의 세부 구분없이 리터당 17원의 법정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별도 탄력세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별소비세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세율 비교]

| 구분 | 「개별소비세법」상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 |
|---|---|---|
| 휘발유 | 475원/L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
| 경유 | 340원/L | |
| 등유 | 90원/L | 63원/L |
| **중유** | **17원/L** | - |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6. (생략)
③~⑥ (생략)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개별소비세법」상 세율</th><th colspan="2">「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th></tr>
<tr><td rowspan="8">석유가스<br>(LPG)</td><td>프로판</td><td>20원/kg</td><td colspan="2">가정・상업용: 14원/kg</td></tr>
<tr><td rowspan="7">부탄</td><td rowspan="7">252원/kg</td><td colspan="2">275원/kg</td></tr>
<tr><td colspan="2">220원/kg (2021. 11. 12. ~ 2022. 4. 30.)</td></tr>
<tr><td colspan="2">193원/kg (2022. 5. 1. ~ 2022. 6. 30.)</td></tr>
<tr><td colspan="2">176.4원/kg (2022. 7. 1. ~ 2024. 6. 30.)</td></tr>
<tr><td colspan="2">193원/kg (2024. 7. 1. ~ 2024. 10. 31.)</td></tr>
<tr><td colspan="2">212원/kg (2024. 11. 1. ~ 2025. 4. 30.)</td></tr>
<tr><td colspan="2">234원/kg (2025. 5. 1. ~ 2025. 10. 31.)</td></tr>
<tr><td colspan="2" rowspan="4">천연가스(LNG)</td><td rowspan="2">발전용 12원/kg</td><td>일반 발전용:<br>12원/kg</td><td>10.2원/kg<br>(2025. 12. 31.까지)</td></tr>
<tr><td colspan="2">열병합 발전용: 8.4원/kg</td></tr>
<tr><td rowspan="2">발전용 외: 60원/kg</td><td colspan="2">발전용 외: 42원/kg</td></tr>
<tr><td colspan="2">수소제조용: 8.4원/kg</td></tr>
<tr><td colspan="2">부산물</td><td>90원/L</td><td colspan="2">63원/L</td></tr>
<tr><td colspan="2">유연탄</td><td>46원/kg</td><td colspan="2">39.1원/kg(2025. 12. 31.까지)</td></tr>
</table>

□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경오염·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부과하고 있음. 1962년 '석유류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 후, 1977년 특별소비세에 편입되었으며, 2008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기존에는 주로 사치세 성격이었으나, 제1·2차 에너지세제 개편(2000년, 2007년)을 통해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환경세적 특성이 강화되었음.

□ 한편,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물품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중유를 수입 및 구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

중유(重油)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연료용 중유'로 원유(原油)를 분별증류해서 얻어지는 석유의 일종인데, 원유로부터 LPG·가솔린·등유·경유 등을 증류하고 남은 기름이며, 주로 디젤기관이나 보일러 가열용, 화력발전용 연료로 사용됨.

다른 하나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로, 국내 정유사들이 2013년부터 정제마진 제고를 위해 원유보다 가격이 낮은 석유중간제품인 중유를 수입하여 석유제품[2]을 생산하였으며, 이후 정제마진 악화에 따른 위험 분산 및 석유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유 투입을 점차 확대하였음.

한편, 원유와 중유를 투입하여 정제공정을 거치면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된 석유제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LPG·휘발유·등유·경유 등 과세 석유제품[3] 및 수출되는 석유제품[4]의 원료로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나프타·아스팔트·항공유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음.

**[생산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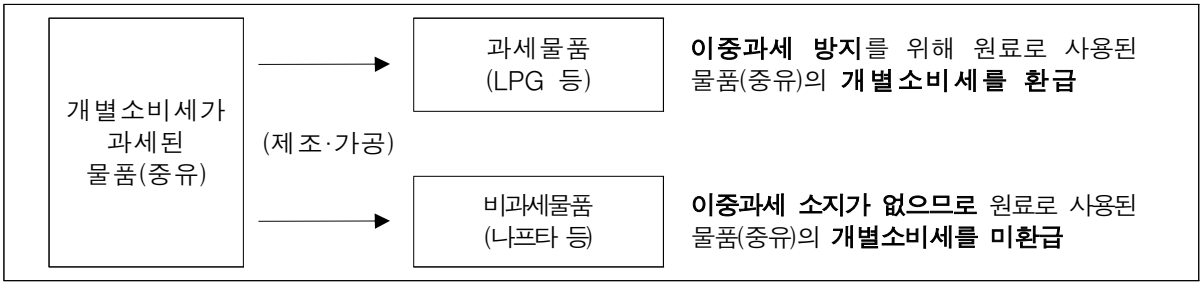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최종적으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생산에 투입되는 중유가 되며,

해당 중유에 대해 202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5]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첫째,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또는 특정장소에의 입장,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재 성격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보통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이지만, 이 세금은 제품의 소매가격이나 입장료 등에 포함되어 결국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됨.

그러나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중유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중유를 통해 생산된 비과세 제품의 세금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대부분 이 중유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6] 또는 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정유회사[7]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고려할 필요성은 있음.

둘째,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6) 석유화학기업은 정유에서 나온 제품을 화학적 처리하여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정유에서 나오는 나프타(가벼운 석유화학 원료)나 프로판, 부탄 등을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 합성수지, 화학비료, 합성고무, 섬유 등을 생산함. 예를 들어,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고 이런 제품들은 음료수병, 포장재,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 사용됨.

7) 정유회사는 원유를 정제하여 주로 연료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원유를 받아서 가공하고 이를 통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솔린(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유 등을 생산함. 예를 들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이에 해당하며 원유를 정제하여 가솔린, 디젤, 윤활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 연료, 항공기 연료, 산업용 기계의 윤활유 등으로 공급함.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원유는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며, 원유 자체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원유가 석유산업의 대체불가능한 필수 원료이며, 그것이 최종 소비재가 아닌 점도 고려했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중유 역시 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산업에서 원료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최종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마다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유와의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중유 또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품 및 과세 후 환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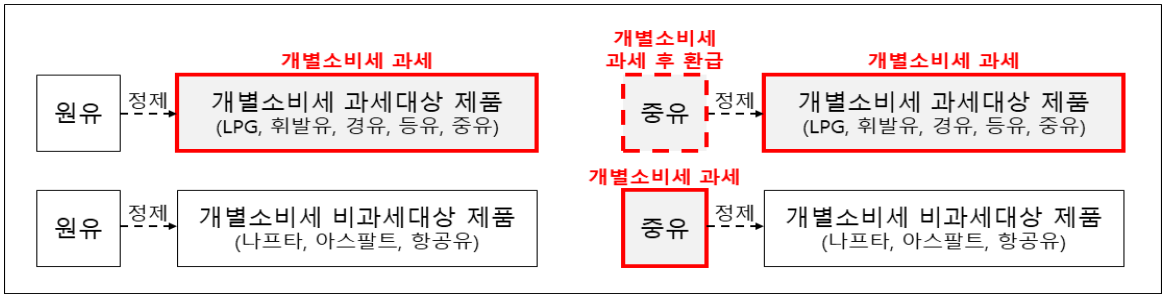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OECD 국가 포함 66개국 중 27개국이 중유에 과세하고 있으나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며, 중국도 석유정제공정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고 있어, 한국의 정유사들이 중유를 원료로 사용할 때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불

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8)]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경우, 2026년 328억원, 5년간 총 1,640억원 세입 감소가 예상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세입 감소분]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누적 |
|---|---|---|---|---|---|---|
| 전체 | -328 | -328 | -328 | -328 | -328 | -1,640 |
| 개별소비세(A) | -259 | -259 | -259 | -259 | -259 | -1,296 |
| 교육세(B=A의 15%) | -39 | -39 | -39 | -39 | -39 | -194 |
| 부가가치세(A+B의 10%) | -29 | -29 | -29 | -29 | -29 | -149 |

둘째, '특별소비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꾼 취지가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9)]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중유를 원료로 하는 최종 석유제품인 나프타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당 제품들이 비과세물품임을 감안하여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서 제

8) 한국조세정책학회, 2020.7

9) 교정세(矯正稅, corrective tax)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 외부 비용(external cost)을 초래할 때, 이를 억제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임.

외하려는 내용인데,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정태호의원안은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에서 원료용 중유를 제외[10]하려는 것이고, 최은석의원안은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추가[11]하려는 것이며, 박성훈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고 「개별소비세법」 상 조건부 면세를 준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비교]

| 구분 | 정태호의원안 | 최은석의원안 | 박성훈의원안 |
|---|---|---|---|
| 개정 법률 |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개정안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다만,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重油)는 제외) |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 면세 방법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건부 면세 | 조건부 면세 |

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다만,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重油)는 제외) ⇒ 단서 추가(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56)

1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이하 생략)

먼저, 과세대상에서 해당 물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신고의무[12]가 없음.

반면, 조건부 면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면세로 반출한 후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서면조사 또는 실지확인조사를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조건부 면세대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며, 만약 면세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즉, 정태호의원안은 원료용 중유를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의무와 납세의무가 없지만, 최은석의원안과 박성훈의원안은 원료용 중유를 조건부 면세대상으로 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를 하는 사후 조건부 면제로 행정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음.

참고로, 원료용 중유에 대해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13]를 신설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

12)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3) 「조세특례제한법」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상 조건부 면세를 준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음.

□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원료용 중유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원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원료용 중유 관련 유사물품·유사산업·해외정유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중유에서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은 국제 시장가격에 좌우되므로 면세시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정유사 영업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문 의 처 |
| --- |
| 02)6788-5147 |

---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